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남궁역, 문성호, 박영한, 박칠성, 성흠제, 아이수루, 유정희, 이영실, 이원형, 이효원, 임만균, 최민규 의원(19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화재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등을 추가하여 서울시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인용법명을 수정함. (안 제1조)
- 나.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호~제8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호번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li> <li>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제1조(목적)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0조-----</p> <p>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li> <li>4. -----</li> <li>5. 「<u>다문화가족지원법</u>」에 따른 <u>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u></li> <li>6. 「<u>건축법</u>」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li> <li>7. <u>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u></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u>5.</u>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p>	<p><u>8.</u>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p> <p><u>9.</u> ----- -----</p>
---	---